

「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26일

중소기업청장

##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기능 확대, 수출지원기관 지원단 설치 및 지역별 수출네트워크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수출애로 발굴 및 해소, 글로벌 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 기능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허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- 나.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수출 지원기관의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2)
- 다.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7조)
- 라.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업무는 수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(안 제9조)
- 마.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와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수출네트워크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(안 제12조 내지 제13조)

### 3. 의견제출

「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해외시장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“정보공개-행정·입법예고”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
(전화 : 042-481-3980, Fax : 042-481-3278)

##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대외무역법 제4조와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”를 “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2조의2”로 한다.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고, 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역량 강화 촉진
6.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
7.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지원단의 설치, 업무 및 관계) ① 중소기업청장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단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단 설치를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
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단을 설치하여야 하며, 지원단을 철수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수출지원기관의 지원단은 원소속 수출지원기관 소속으로 하고 원소속기관의 고유업무와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협업업무를 수행한다. 지원단은 협업업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④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단 직원이 협업업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단 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평가한 수출지원기관의 지원단과 파견인력의 협업 업무 정도를 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의 제목“(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)”을“(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속임수에 의해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지원기간 중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및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지정”을 각각 “지정 및 취소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업무는 지원단 또는 파견직원이 수출지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지원센터에서 처리할 업무는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수출지원협의회)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해소와 수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수출지원기관의 지역의 장 및 수출 전문가로 수출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 사업의 공유 및 협력
2.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업무 발굴
3. 중소기업 수출애로 발굴 및 해소지원
4. 기타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수출네트워크)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출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(영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(영)의 개정)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를 삭제한다.